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55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민병덕 · 정혜경 · 김승원
조인철 · 이인영 · 한민수
이강일 · 김영배 · 박해철
복기왕 · 장철민 · 박홍배
진성준 · 김문수 · 김현정
안도걸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 기한인 60일을 꼭 채워 지급하는 소위 ‘늑장 결제’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량 미정산사태로 인하여 영세한 납품업체들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볼 때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매입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 ----- ----- ----- <u>14일</u>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 ----- <u>30일</u>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